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시 체 해 부 및 보 존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연구 목적의 시체 제공 기관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의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별표2)

- 1)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 2)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검사·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경우	법	200	300	500

	제21조제1항제1호			
나.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1항제1의2호	200	300	500
다.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1의3 호	200	300	500
라.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200	300	500
마.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200	300	500
바.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검사·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4호	200	300	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615